

보육실습기준

변경사항 적용시점 : 2013년 3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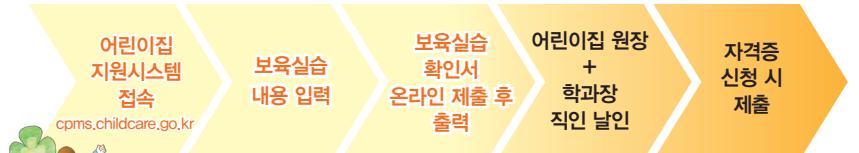
● 보육실습 기준

구 분	기 준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주 160시간 (야간 대학 등 :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인정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신설)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보육실습확인서의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에는 기준과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과정 〉



Q & A

- 01 2013년 3월 2일에 대학을 입학하였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학점기준은 무엇인가요?

2013년 3월 2일에 입학을 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따라 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을 한 사람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02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2015년 2월 22일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됩니다. 즉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은 현행 기준에 따라 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2014년 3월 1일 이후에 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은 개정 기준에 따라 17과목(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03 저는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여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 취득 후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2급 승급교육도 수료했으며, 2014년 3월 2일에 1년 경력이 됩니다. 이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개정법 시행일은 2014년 3월 1일이므로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경력을 갖추어야 현행 기준에 의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2일에 1년 경력이 되는 경우 개정 기준(보육교사 3급 +2년 경력+승급교육)을 갖추어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04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도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각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05 저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어린이집에서 2012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력으로 2014년 3월 이후에 자격을 신청하면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2014년 3월 1일) 전에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2014년 2월 28일 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자격 신청 시 개정 기준(보육교사 1급+1년 경력+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갖추어야 합니다.

- 06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생을 1년에 3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나요?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에 갖춘 교사 1명이 등 실습기간에 3명 이내로 실습을 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3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07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이 있나요?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번호
1661-5666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129
1661-5666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3월 1일부터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및 사전직무교육 신설

구 분	현 행 기 준	개 정 기 준
일반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유치원	유치원 정교사 2급 + 5년 경력	유치원 정교사 1급 + 3년 경력
가정	보육교사 2급 + 2년 경력	보육교사 1급 + 1년 경력

장애아전담 일반자격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사전직무교육 (신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구 分	현 행 기 준	개 정 기 준
보육교사 2급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 1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 2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경력인정 직종변경

보육교직원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세부 경력 안내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참고

2014년 3월 1일 이후 현행 기준 해당자의 자격증 발급

-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후 서류제출 필수)

* 단, 현행 기준에 의한 대학 졸업자 및 학위 취득자는 제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적용시점 : 2014년 3월 1일



일반

- 보육교사 1급
- 유치원 정교사 1급
- 초등 정교사
- 사회복지사 1급
- 간호사
- 7급 이상 공무원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3년
3년
5년
5년
7년
5년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가정

보육교사 1급 + 1년 보육업무 경력

영아전담

간호사 자격 + 5년 아동간호업무 경력

장애인 전 담

-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전공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공 통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80시간) 필수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직무교육은 원장 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요

* 사전직무교육 상세 일정은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보육교사 자격기준

적용시점 : 2014년 3월 1일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 3년 보육업무 경력
or
보육관련 석사 + 1년 보육업무 경력

보육교사 2급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or
보육교사 3급 + 2년 보육업무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보육교사 3급

고졸이상 학력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25과목 65학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대학 등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기준 12과목(35학점) 이상 → 개정 기준 17과목(51학점) 이상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화,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인지학,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 체	17과목(51학점) 이상	

적용기준

현 행 기 준 적 용	개 정 기 준 적 용
대학 등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사람
학점은행제 등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2014년 3월 1일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